등록번호: 20215437

최초 등록일: 2021.11.17. 최종 등록일: 2024.11.15.

고야반

[opo7100@daum.net]

정보공개서

농업회사법인 100년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4 . 22 .

농업회사법인 100년축산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대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71번길 22-2, 농업회사법인 100년축산 주식회사

Tel: 031-766-0119 (가맹사업부와 동일)

Fax: 031-766-0889

목 차

т	가매보비이 이	일반 현황
1.	10TTA E	로 다 한 5 ·································
п.	가맹본부의 기	가맹사업 현황 ······
Ш.	가맹본무와 _	고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n
V.	영업활동에 다	∦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	병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몬무의 경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Ш.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71번길 22-2, 1층				
농업회사법인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00년축산 주식회사	2016. 6. 22		2016. 6. 22.	채형석	031-766-0119 02-766-088		02-766-0889
. , , ,	법인등록번호	134211	1-0177819	사업자등록	루번호	458-	88-0043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농업회사법인 100년축산 주식회사	고야반	경기도 광주 대표자 ² 채형석	시 오포로 171번 대표전화번호 031-766-0119	대표팩스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고야반]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고야반	고기,야채,반찬의 줄임말을 영문으로 표현
상 호 ^②	고야반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합니다.
상표(서비스표) ^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없음(출원예정)
광 고 ^④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870,567	1,680,690	2,189,877	6,249,215	770,269	838,629
2022년	3,870,567	1,680,690	2,189,877	6,249,215	770,269	838,629
2023년	3,740,035	1,276,576	2,463,458	6,644,814	1,032,747	925,37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³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2277) D	2 71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채형석	대표이사	2016.12.~ 현재	대표이사	회계·자금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①	
八名	상근	비상근	주천구(경)	
2023년 12월 31일	1		3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농업회사법인 100년 주식회사	직영점 운영	'21.8.12~	고야반(정보공개 등록증) -한우, 한돈, 야채 무인자판기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해당없음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고야반] 가맹사업 현황

1. [고야반]을 시작한 날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08월 12일)

2. [고야반]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100년 주식회사	고야반	채형석	'21. 8. 12 ~	경기 광주시 오포로 171번길 22-2, 1층

3. [고야반] 업종

영업표지	업종			
7 Al-Hl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고야반	농수산물, 식품	한우, 한돈, 반찬, 야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고야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A-1	20)23. 12. 3	31.	20)22. 12. 3	31.	20)21. 12.	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1	0	1	1	0	1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1	0	1	1	0	1	1	0	1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고야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해당없음	_	_	_	_	_	_

6. [고야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고야반]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7 11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①	가맹	점/직영점의	수 ^②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입장	_	_	_
해당없음	_	_	_	_	_	_	_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mathbb{Q}}$ 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mathbb{Q}}$

[고야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³.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구 매출액		
지역 ^④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¹ 매출액(I	연간 ⁵ 매출액(비교 ^⑤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_	해당없음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고야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②	상호/명칭 ^③	주 소		
해당없음	_		_	
지역사무소 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④	

_	_			_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		가맹금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국	권한 ⁵	수령권한 [©]
-	_	_	-	_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고야반]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³	지출 비용	용(단위: 천원 미포함)], 부가세	비고 ^④
, ,	, L	, ,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
합계	-	해당없음	_	_	-	해당없음
광고	-	-	-	-	-	-
판촉	_	_	_	_	_	_

10.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해당없음	_	_	_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extstyle 0}$

해당없음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②	조치일자 ³	조치내용 ^④
-	_	_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해당없음

원고 ^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_	_	_	-	_	-	-

3. 형(刑)의 선고

해당없음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_	-	_	_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야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100 만원	계약	-가입비(가맹비의 5%)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 원(가맹비의 95%)
교육비	330 만원		-개점 전 운영/서비스/자판기사용 및 프로그램 교육

-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가맹사업보증 보험증권]	200 만원 (VAT없음)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 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 포함)		
합계	1,630만원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	200만원(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3.3m²당 금액 [®]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⑤
총계		9,540만원	_	-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33㎡ (최소10평 기준)	가맹본부	2,500만원	250만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250만원 추가부담 (철거,냉,난방기 별도)
무인자판기 4대 (키오스크 2대	가맹본부	키오스크set 3,300만원	_	상품 발주전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냉동1대 냉장1대)	71061	냉동,냉장set 2,200만원		01 216	당사의 귀책사유가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주방/홀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1,100만원	_	상품 발주전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440만원	_	물품 공급 1~2일 이전	없음	한우,한돈,야채, 반찬 등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및 자체조달	철거, 수도, 폐기물, 인4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점포 내/외장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440만원(VAT포함)의 기획관리비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²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고야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만원)	_	총액의 10%	40%	30%	20%
납부일	_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비고	_	_	-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²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50만원	다음 월 10일	_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_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월 매출액 0.5% 등	다음 월 10일	_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_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_	_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_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회 100만원	교육 실시 10일 이전	_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_	_	_	_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가맹본부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_	_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지연이자 [©]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②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③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④	_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직영점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의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 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 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고야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 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 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

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고야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人山	五日(rlol)	공급기	구분 ³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丁七。
1	해당없음	_	_	_
2	-	_	_	_
3	-	_	_	_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고야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해당없음	-	-	-	_
	7	-	_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고야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금액 ³	비고 ^④
해당없음	_	-	-	_	-
계				_	-

2) 당사가 [고야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_	_	-	_	-	_
계					_	_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건 ^②	위반시 책임 ^③	비고 ^④
꽃등심 채끝 양지 사태 국거리 통삼겹 통오겹 통모살 삼겹살 모살 목살 특수모등(한돈) 등갈비 미전지 찌개고기(한돈) 곰탕(소) 곰탕(대) 차돌박이 한우 불고기 종합야채 파절이 배추겉절이 고추무침 깻잎짱아치 깍두기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더덕무침 창란 젓갈 명태 회무집 가야된장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①	상품 · 용역명 ^②	제한내용 및 조건 ³	위반시 책임 ^④	비 <u>고</u> ⑤
해당없음	_	_	_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권장가격(단위: 원) ²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꽃등심	24,000		
채끝	24,000		
양지	13,500		
사태	7,500		
국거리	10,500		
통삼겹	11,000		
통오겹	11,000		
통목살	10,000		
삼겹살	11,000		
오겹살	11,000		
목살	10,000		
특수모듬(한돈)	17,500		
등갈비	9,500		
미전지	4,500		
찌개고기(한돈)	3,500	6 묘원소크 코키	
곰탕(소)	2,800	유,무선으로 공지	
곰탕(대)	13,000		
차돌박이	15,000		
한우 불고기	22,000		
종합야채	2,000		
파절이	1,650		
된장깻잎	1,000		
고추무침	1,200		
깻잎짱아치	1,000		
깍두기	1,000		
막지 <u>정</u> 갈	1,900		
오징어 젓갈 명란젓갈	1,000 2,200		
'5년')(설 	1,900		
명태 회무침	2,800		
시래기찜	1,3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등 글만 집중 팀게 ⁻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반찬, 야채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고야반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25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어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직선거리 250M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극장, 푸드코트,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당사의 관리가 미치기 힘든 부분이므로 이는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유통업체명 ^②	주소	취급품목 ^③	가맹점과의 구분 ^④
온라인	미정	_	_	_
홈쇼핑	미정	_	_	_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u>.</u>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미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0%	100%	0%	0%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고야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 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씩 연장 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가.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계약갱신 기준(이하 "평가기준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
 - 나. 귀하의 점포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다.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 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인/허가 취득 등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또는 물품판매의 제한
- ④ 메뉴판매의 제한 등 ⑤ 고객 컴플레인 관련 ⑥ 가격결정의 제한 ⑦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 8 유니폼 착용 9 광고 및 판촉 10 경업금지 11 상품공급의 중단 12 로열티의 납입 1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 14 관계법령의 준수
- 3.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당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6.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귀하의 요건 변동 시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9. 귀하가 당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 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u>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u>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
- 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
- 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
- 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

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①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u>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u>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330만원, VAT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에서] 귀하 및 제 3자로 하여금 [고야반]과 동일 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가맹사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 '-	,	"- ' '

가맹계약의 기간 에 따른 기간	한우, 한돈, 야채, 반찬의 판매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야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무인 및 종업원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²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④
점주 자율	직접 및 무인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 매입 여부 확인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 청소현황 등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고야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_	_
	개별광고	_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브랜드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전체 또는 지역 가맹점에 안분)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30일 전 계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 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국 및 지역별판촉			
_	개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가맹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 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귀하로부터 발생한 12개월 "월 평균 당사의 수익" x 10% X 잔여개월수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표의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당사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당사의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산정합니다.
- *당사의 수익이라 함은 로열티, 물류수익, 판매수수료 등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귀하를 통해 당사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수익을 통칭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귀하가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⑧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⑨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⑦ 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7 8	, il o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구분	내용	47일 내외	미정(협의)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수령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영업설비/집기입고 - 무인자판기, 냉장고, 주방집기 입고		D-7~4(3일)	
초도물품 입고	- 초도판매 물품입고(한우,한돈,반찬,야채등)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H -1-1·1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의장테의가으정우 나의로여업일지렵상영현지주 보기 의 안결인가의성하거적업저장는 이 보고 되 위안결인가의성하거적업저장는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집기의을 제외 한 실내건축요 되는 일에 가 망이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무명점 사업 자가 함에 되는 이 모에 되는 이 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10% 이점포의 확장 보경개선: 10% 이점포의 학장 수 일을 이전포환경기 선: 20% 이 무자 월평 관 수 반하는 10% ~ 20% -점포환경기 선: 10% ~ 20% -점포환경기 선: 의학장 부담 10% ~ 30% -단, 집기·장 부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발도의 합의가 있는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 가당 기맹본부가 지정한자 부합지급 가당 기맹본부 무당하여 점포환경개선의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시절차〉 이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사비용 기급 (분할지급 시절차〉 이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사비용 기급 시절차〉 이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사비용 기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총부담액을 분당 지급일로부터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총부담액을 이내,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부터 60일이내,총부터 60일이내,총부터 60일이내,총부터 60일이내,총부터 60일이내,총박타액의 40%)	가의 없유약료의영포는 가부증기비부지아나지경환맹 는로이 (해양)경본 전하액하하이 급에 우수 한당 하내 하다 하는 가수 중에 하는 이 하는 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가맹본부
가맹본부	 가맹점 운영과 관련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부담
필요 시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진행	된 경영지도	발생 시 가맹점에	은 가맹점
		서면으로 해당 내용	부담)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기메저시어지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기마자
가맹점사업자		일시, 소요비용 등을	│ 가맹점 □ □ □ □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부담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고야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①	신용제공자 ^②	급액 ^③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⑤
해당없음	_	-	_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3일 (점주 협의 하에 변동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개점 전)	개점 서비스 교육	(지정 교육장)	될 수 있습니다.)	330만원 (VAT포함)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교육 또는 부정 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관리자(교 육에 따라 종업원 포 함)교육	메뉴 제공방법 및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 제반 교육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교육	3일 (점주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30만원 (VAT포함)	관리자 지정/교체 시 (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본사직영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71번길 22-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②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9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³
145,311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 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 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 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 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